
제7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전체회의 개최 결과

2017. 12. 15.

국 가 기 록 관 리 혁 신 T/F

제7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전체회의 개최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2017. 12. 15.(금), 10:00~12:00
- (장 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8층
- (참석인원) 위원장, 위원 및 지원팀 등 22명
 - 안병우(위원장), 심정보, 설문원, 조영삼, 최재희, 이원규, 현문수, 김창조, 정경희, 이상민, 전진한(위원) ※ 홍성덕, 이영남, 임진희 위원 불참
- (회의내용) 분과별 추진현황 보고 및 안건 토의

□ 주요 논의 내용

< TF 운영 관련 >

- (회의록 확정) 제6차 전체회의 회의록 확정 여부 → 확정
- (회의록 공개) 제6차 전체회의 회의록 공개 여부 → 공개 결정

< 분과별 과제 관련 >

- (1분과) 「폐단혁신」 11개 과제 관련, 관련자 면담·서면답변 추진 및 보고서 작성 중이고, 2, 3과제 관련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 예정(심정보)
 - 1과제 관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 속기록 요청에 대해, 소관부서의 미온적 협조(비실명화 열람 등) 및 철저한 기록화(미등록) 미흡 확인(심정보)
⇒ 해당 부서에 T/F총괄팀장 명의로 자료 제공 불가(비실명화 열람 포함)에 대한 사유 및 자료 제출 재요청(위원장)
- (2분과) 의견수렴 결과(일치되지 않는 의견, 예외사항 등)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고민 중이고, 큰 방향을 다음 전체회의에 보고(설문원)

- 공통 혁신과제, 기관유형별 혁신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 필요(위원장)
- 공개재분류 개선 관련, 폐지 공감대 형성(전진한)
 - 폐지보다는 할 수 있는 여건과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기록관 혁신 방향과 맞음(설문원, 김형국)
 - 기록물을 보유한 기관에서 관리 권한(공개권한 포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바꾸어야 가능함(조영삼)
- 분류체계, 보존기간과 공개재분류 등 통일성 고려 필요(최재희)
 - 기록관리 스케줄링으로 전환은 파장이 클 것임. 기록연구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되어 있어 기록원-기록관 협업을 통해 단계적 추진 필요(설문원)
- **(3분과)** 우선과제는 초안을 작성하여 검토 중이고, 중장기 과제는 쟁점토론을 통해 초안 작성 중임(이상민)
 - 법령 상 유출은 종이기록물의 유출 중심으로 유출조항들이 만들어져 있고, 정보유출과 원본 유출에 대한 구분도 없어 정리필요(설문원)
 - 대통령기록물 유출(10.4남북정상회담, 송민순 회고록 등)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음(전진한)
 - 제도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 대통령기록이나 사본이 유출되면 안 된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야 가능함(조영삼)

□ 향후 계획

- 제8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전체회의 개최(12.22.)
- 제9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최종보고서 관련 회의 개최(12.28.)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최종보고서 제출(12.29.)

< 회의 개회 >

위원장 :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차 회의록에 대해, 저와 심정보 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주셨고, 수정이 되었음. 추가 수정의견이 없으면 회의록을 확정하겠습니다. 6차 회의록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없으면 전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총괄 보고 >

위원장 : 추진현황 보고 및 안전토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책과장님은 연가 중임

김형국 : 지난 주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혁신방안 의견수렴을 잘 마칩. 317명이 참여함.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등 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분임토의는 7개로 나누어 집중 토의하였음. 그 결과는 향후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메일로 보내드렸음. 그리고 발표자료집과 의견수렴결과는 기록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음. 원내에도 공유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음. 회의록은 5차 전체회의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음. 향후계획은 다음 주 금요일 마지막 전체회의가 있고, 원장님 오찬이 예정되어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질문있으신지? 보고서 작성 막바지에 들어가서 부담이 크실 것임. 대학에 계신 분들은 성적처리도 해야 해서 더 부담될 듯함. 지원팀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분과보고로 가겠음. 오늘은 3분과부터 시작하겠음

< 분과별 보고 >

이상민 : 우선 과제 작성은 3과제를 제외하고 초안이 작성되어 검토하고 있음. 우리가 골자와 내용을 작성한 것도 있고, 골자만 한 것은 지원팀에서 정리를 하고 있음. 과제마다 내용의 분량에 편차가 있을 것 같음. 담당위원이 초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고, 다른 위원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초안검토를 마무리 하려고 함. 연찬회에서 나온 의견 중 대통령기록 생산기관 기록관리 개선과 지정보호 제도가 추가 될 것 같음. 중장기과제는 논의와 쟁점 토의를 하고, 위원들이 분담하여 초안을 작성 중임. 5과제 기록의 정의 부분은 다른 분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제시하겠음. 대통령기록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만 좀 특별하게 더 언급을 하고자 함. 공공기록에서 정의되지 않는 대통령기록의 범위부분은 구체화해서 제시 하려고 함. 6과제는 임진희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SNS 기록 같은 경우에는 선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 대통령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선별할 수 있는 방법론 등을 마련해야 함. 선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한다 등을 논의 하고 있음. 7과제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얘기를 많이 나누었음. 사본 유출 같은 경우, 법에서는 사본을 기록으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원본이 부재하는 경우, 사본인 경우에도 원본으로서의 효력이 현재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음. 사본 기록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유출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 다음으로 는 공공기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에서 그랬는데, 대통령기록을 공공기록으로 거의 재생산하다시피 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들에 대한 방지책을 논의했음. 원래 비밀기록 관리 원칙에서 보면, 비

밀기록을 이용해서 기록을 만들게 되면 파생적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로 취급해야 함. 파생기록을 만들었을 때 이걸 공공기록으로 볼 것인지 대통령기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명시하고자 함. 지정기록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지정기록에 준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 논의를 해 봤음. 현재 작성 중이고, 각 전체위원이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서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에 대해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아 간략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음

위원장 :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만 해도 논란거리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음

전진한 : 대통령기록은 무단파기, 무단유출에 대해 구분을 하지 않고 처벌 조항을 만들어 놓았음. 무단파기는 사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본 중심임. 유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봄. 판례들도 왔다 갔다 함. 대표적으로 정윤희 십상시 문건 등임. 당시 대통령기록이냐 아니냐 내용 유출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었음. 김만복, 송민순 장관 문제도 있었음. 개인적으로 사실상 대통령기록을 확인 한 후에 내용을 흘리는 것은 무단유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함. 단 상황별로 국회나 여러 기관의 판단이 달라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음

설문원 : 유출과 관련해서 국면마다 기록관리 측면에서 다른 입장을 내서 너무 정치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음. 따라서 TF에서 나온 산출물은 정치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기록관리 측면에서만 정리했으면 좋겠음. 기록관리법 상 유출은 과거에 종이기록물의 유출 중심으로 유출조항들이 만들어짐. 정보유출과 원본유출이 구분 없이 있음.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좋을 듯함. 사본도 대통령기록물임. 다만, 유출부분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찌라시 유

출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 필요함

김창조 : 비밀이 아닌 이상 유출 자체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정기록물도 가능하면 비밀성을 갖추면 일치시키면 좋은데, 그럴 경우 지정기록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함.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부분을 설계하면 좋을 듯함

설문원 : 파생비밀이나 파생지정기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의 전제는 지정기록물의 목록이 있어야 함

이상민 : 아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기록임. 지정기록과는 무관함

설문원 : 지정기록물이 있고, 지정기록물의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한 다른 부처의 기록이 있을 경우, 이것을 연계해서 규제하자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상민 : 공공기관이 지정기록으로 인지한 이후에 관리해야 하는 것을 말함.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자서전, 언론 등에 공표하여 내용이 공표된 경우, 지정기록을 해제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그때 지정기록으로 인정 해서, 비공개를 했다가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임. 지정기록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해야 함. 공공기관이 지정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는 상정을 안함. 비밀은 비밀로 받는 순간 기관이 비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로 관리해야 함. 문제는 비밀기록과 지정기록이 동시에 지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비밀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그것이 지정기록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임

김창조 : 비밀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눔. 하나는 형식비, 형식적으로 1, 2급 비

밀로 분류됨. 두번째는 실질비인데, 그 내용이 비밀인 것인데,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 실질적 비밀임. 비밀지정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따짐. 파생비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면 비밀로 보고 있음. 대통령기록물도 지정기록은 내용과 관계없이 지정하면 무조건 비밀이 됨. 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밀성을 갖추고 있으면 비밀로 관리해야 함. 지정을 하지 않아도 비밀로 관리해야 함

이상민 : 우리는 비밀기록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내용상의 비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록관리 파트에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위원장 : 파생비밀들이 대통령 기록에서 비밀로 지정된 것과 부처들에서는 그 내용을 일부 담고 있는 파생비밀을 생산하게 될 것임. 그것을 모두 대통령기록에 준해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상민 : 대통령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비밀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임. 원래 파생비밀은 원생비밀이 해제되지 못하면 해제 못 함. 지난번 국정원에서 파생비밀을 비밀기록으로 만들어서 국정원장이 비밀 해제했다는 것이 문제임. 기록의 내용을 가지고 비밀로 했을 경우 파생비밀로 봐야 함

위원장 : 그것은 파생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음. 논란거리가 됨

전진한 : 10.4 남북 정상회담회의록이나 송민순 회고록 등의 경우 악의적이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두 건 모두 대통령기록물법의 기소가 되지 않음.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함. 처벌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방

향을 잡아보는 것아 어떨까함. 다만, 공익제보 같은 경우가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되긴 함. 앞의 두 사례 관련해서는 선거철 같은 시기에 못하도록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상민 :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위원님들에게 초안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함. 어느 정도 악용을 막을 수 있을 지 생각해 보아야 함.

조영삼 : 입법이 가능한 수준으로 논의를 해야 함. 전진한 위원이나 설문원 위원이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는 입법 조문을 구성하기 어려움. 입법을 할려면, 대통령기록과 관련, 대통령기록의 사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버리면 됨. 대통령기록이나 사본이 유출되면 안된다고 하면 됨. 논리적으로 계속 대립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입법이 어려움. 제도를 제안하려면 원리 원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제도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입법이 가능한 조문을 이야기 해야 함. 명확하게 규정해줘야 함

설문원 : 안을 가지고 오면 논의하면 됨

이상민 : 어려운 문제임. 이런 얘기를 하는 데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했음

위원장 : 또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음

이상민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과제도 일반 공공기록을 벗어나서 하기는 어려움. 대통령기록의 경우, 가능하면 대통령기록에만 적용되는 정의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음. 2분과와

협업하겠음

위원장 : 범위와 관련해서 연찬회에서 민주평통 연구사가 제안한 것이 있던데?

이상민 : 미국의 경우, 백악관 기록 안에도 대통령기록과 공공기록이 생산한 기관의 성격에 따라 분리가 되어 있음. 우리가 그것 조차 분리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자문기구가 법률적 기반으로 설립된 것은 공공기관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5년 마다 기록물을 이관하다 보니 자문기구 등의 기록물을 일제히 이관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음. 충분히 검토될 여지가 있음. 대비실쪽에서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 부분임.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기록을 대통령 기록에서 제외시킨다는 이야기임

위원장 : 2분과로 넘어가겠음

설문원 : 연찬회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음. 사실 현장에 있는 연구사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것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수렴해야 할지 고민임. 다만, 예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예를 들어 통합기록관 설치에 대해서 경찰청 등이 지역 경찰청 하부에 기관이 방대한 경우는 다른 기관과 같은 통합기록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저희 개선 방안에 감안할 생각임. 어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지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견들에 대한 합의를 얼마나 충분히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음. 우리 분과 내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임. 가급적 분과 내에서는 방향성을 모아서 다음 회의에서는 큰 방향을 확인하고, 의견을 듣겠음. 그리고 대부분 연찬회 의견이 다 우리분과 의견이고, 고맙게도 임진

회 위원이 시스템 분과를 통해서 시스템관련 다른 프로세스와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심. 제시해 준 의견을 추가로 보완하겠음

위원장 : 현장에서 일하는 기록연구사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관의 입장에서 이야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공통적으로 혁신해야 할 과제, 그리고 기관별로 유형을 나누어서 필요한 혁신 방안을 내주는 것이 있을 수 있음

설문원 : 저희는 일단 과제 내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중점으로 추진 방안을 이야기 하고, 예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음. 특히, 기타공공기관 같은 경우 의견이 너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됨. 관리기관에 넣어 달라, 한쪽은 완전 빼달라고 함. 최대한 특수성을 표시는 하려고 함. 맞춤형 모델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음

위원장 : 그 부분은 국가기록원의 과제로 넘겨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음. 2분과 보고와 관련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전진한 : 2분과에서 나온 얘기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예를 들면 공개재분류를 폐지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는데?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진 듯함

설문원 : 저희 의견은 폐지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순간 재분류라는 행위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라, 개인정보에 대해 5년 후에도 여전히 비공개 인데, 다시 재분류해야 하는 상황임. 지금과 같은 재분류 방식이 아닌, 비공개 상한제도나 개인정보 관련 재분류를 하지 않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음. 레코

드 스케줄링 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 기록물 집합체에 적용될 수 있는 관리 속성 안에는 보존기간 뿐만 아니라 공개, 비공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집합체의 공개기준 같은 것들을 부여할 경우에 매번 전수를 재분류해야 하는 것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함. 보존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만 재분류를 하자는 의견도 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하겠지만, 재분류는 비공개를 줄이기 위해 하는 것임. 그 정신은 살리되 지금과 같은 업무 부담으로는 하지 않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음. 폐지는 지금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음

김창조 : 일선에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로 재분류 하는데 5호 같은 경우 정보가 오래되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록물에 관한 공개기준은 정보공개 기준과는 별도로 만들어 처리 되어야 할 것 같음

이상민 : 국가기록원에 있을 때 제 경험으로는 일제시대 판결문까지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음. 역사기록, 보존기록물 관리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보공개법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먹혀들지 않았음. 우리는 기록물에 대해 열람신청하면 될 것을 모두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외국 같은 경우 열람신청해서 판단해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비공개인 경우, 그때 가서야 정보공개 신청을 함. 그런 시스템으로 안될 까요?

설문원 : 저희도 그 안이 들어가 있음. 정보공개서비스와 관련해서 법제도가 현용과 비현용을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 호주는 분리함. 아카이브에 오면 아카이브법에 의해 공개서비스 제도가 운영되는 모델이 있는

데, 지금 현재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서비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음. 그 부분을 분리해서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음. 물론 공개, 비공개 기준은 정보공개법의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절차 등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서비스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이상민 : 우리가 법령 개정안을 제시할 경우, 다른 법을 건드리게 됨. 이 경우, 정보공개법을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됨. 주무부서와 의견이 부딪칠 수밖에 없음

조영삼 : 정보공개법 상 정보의 개념을 바꿔야 함. 정보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는 의미가 없음. 정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임.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도 모두 공공기관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그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안 됨. 이를테면 기록물을 보유한 기관에서 관리 권한, 공개권한을 갖지 않으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봄. 현실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벗어나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아니면 방금 우리가 제안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음.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문제이지 기록관리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임. 그렇게 논의해서는 안 되는 문제임

설문원 : 지금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지금과 같은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정보를 서비스 하는 하는 것은 맞지 않음

조영삼 : 지금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에서 기록을 서비스하는 절차

가 정보공개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음.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
에상 정보와 기록을 명확히 구분해서 정의하지 않으면 안됨

김형국 : 양쪽 다 정리해야 하는 것이 맞음. 특히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
해 줘야 함. 기록과 정보 개념의 혼선이 많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
은 정보공개법이 기본법임. 다른 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은 해당 기관
에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 이것이 이관되면 의견청취 절차 없
이도 기록물관리기관이 재부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관 개념에
모든 권한이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넘어 온다는 것을 규정해야 함

조영삼 : 그것이 두 번째 문제임. 제가 제기한 것이 첫 번째 문제임. 실무적
으로 공개재분류의 제일 어려운 것이 김형국 연구관이 이야기 한
그 문제임. 재분류 대상 자체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생산기관 의견
조회를 해야 하는데 의미있는 피드백이 오지 않는 것임. 그래서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됨. 제가 있는 기관에서 5억, 6억 투입해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복되는 것임. 구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 공개재분류 프로세스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정
보공개법과 기록관리법의 운영 논리,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가
문제의 본질임

김창조 : 정보를 생산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생산당시와 같은 기준을 가지
고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 의해 비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음. 5호
정보의 핵심은 의사형성정보와 행정운영정보인데 이제는 아무런 관
계가 없음. 그런데도 그 이유로 재분류가 됨.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임. 정보공개기준과 기록물 공개 기준을 나누어서
해야 할 듯함

전진한 : 정보공개법에는 공개와 비공개, 부분공개만 있음. 한 번 비공개 되면 공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재분류 제도를 둔 것임. 저는 제한 공개제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물관리법의 제한적 열람을 정보공개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임. 검찰청이나 이런 곳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일 경우, 판례적으로 그 분에게만 공개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음. 그 제도를 두면 건건이 하는 공개재분류 제도가 필요가 없을 것임. 그러한 방향으로 크게 입법화 하기 전에는 제한공개제도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함

조영삼 : 정보공개제도 자체에 집중하니까 하는 말씀임. 기록정보서비스를 할 때는 스캐닝 데이터 가지고 서비스함. 비공개되어 있으면 서비스를 못 함. 그렇기 때문에 재분류를 함. 보다 많은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하는 것임. 비공개되어 있으면 제공할 수 없음. 재분류를 많이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김창조 : 문제는 30년 전에 기준을 가지고 5년마다 반복하고 있음. 5호 정보는 필요가 없음. 5호는 30년이 지나면 기능을 못함. 그런데도 5호로 재분류 함

조영삼 : 기록관에 이관되면 기록관에서 정보공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면 됨

설문원 :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조정이 됨

조영삼 : 의견 청취는 할 수 있음. 권한 자체를 기록물을 보유한 곳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됨

설문원 : 이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정보, 수사 등 몇 가지 사안의 경우 의무적으로 생산기관에 의견을 청취함. 나머지는 의무적이 아닌데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조영삼 : 그렇지 않음. 생산기관이나 부처에 의견을 물음. 그러나 부서에서는 피드백을 해주지 않음. 그것을 바꾸면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임

김형국 : 정보공개와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 문제는 현장의 인력과 여건들이 안되니까 부담스러운 사안임.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정보공개, 재분류와 관련된 권한을 기록관에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음. 2분과에서는 기록관에서 기록들을 장기보존하게 하고, 활용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음. 따라서 기록관에서 재분류를 하지 않을 수 없음

조영삼 : 지속적인 서비스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재분류 하지 않을 수 없음. 웹에 접근해서 기록을 봐야 하는데, 안보여 준다고 불만임

설문원 : 그러한 부분은 들어가 있음. 저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서비스 절차는 다르게 규정하겠음.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의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하고,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음

위원장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뿐만 아니라, 기록관의 기능을 확대하게 되면, 기록관에도 유사한 기능을 가져야 할 것임.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음

조영삼 : 정보공개 확대가 옳음. 처리과가 책임지지 않고, 기록관이 책임지면 공개범위가 확대됨.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지 않음

김형국 : 현장에서는 정보공개업무를 곤란해 함. 옳은 원칙이고 방향이라고 한다면,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건을 갖추고 진행해야함. 현장에서는 정보공개를 제외해 달라고 할 것임

조영삼 : 제가 보기에는 기록관리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음. 접수 배부 업무는 빼고, 공개재분류와 공개여부 기준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역할 임

설문원 : 어쨌든 공개업무 관련해서도, 연구사들의 의견이 많이 다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가 필요함

위원장 : 기술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함.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에서 하는 정보공개, 각 부처 기록관에서 하는 것, 두 번째는 기록연구사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임. 영구기록물관리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함

최재희 : 2분과의 평가제도와 6-2의 분류체계, 보존기간과 공개재분류 문제 등이 다 연계 된다고 생각함. 보존기간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 단계의 역할이 달라질 것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설문원 : 분류체계하고 기록관리 스케줄링을 완전히 바꾸자고 건의를 드리는 건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임. 그것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할 수 없음. 기록조사에서 법규분석까지 추가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부

분임. 지난 번 제가 분임토의 시 물어봤음. 국가기록원이 기록조사를 할 때 개별 기관별로 알아서 하면 안 되니까, 유사기관끼리 묶어서 일차적인 기록조사를 하고 각 기관의 고유성을 추가한다든지 하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법규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법률을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만 가능함. 많은 지원 자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투여가 되어야지만 가능함

이원규 : 현재 국가기록원의 역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상민 : 기관별로 평가 분석 등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

조영삼 :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기는 어려움. 단계적으로 일정을 잡아 해야지, 국가기록원이 맡아야 한다는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봄. 저는 서울시에서 BRM정리를 30% 목표로 진행했음. 해보니 그 정도가 나왔음. 2년간 비용을 투자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쉽지 않았음. 더군다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수량체크 정도만 파악하고, 그 이상을 하지 못함. 정교하게 짜지 않으면 어려움. 목표를 높게 잡으면 실제로는 잘 안될 수 있음

설문원 : 저희의 작업 중점은 BRM을 잘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기록연구사들이 현장에서 각 기관 기록물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BRM 자체가 현행의 업무를 반영해 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임. 그리고 BRM을 도입한 목적이 기록물을 잘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있음. 기록연구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연계되어 어떤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총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봄. 연구사들의 전문성 차원에서도 중요함. 분류체계 혁신 자체가 연구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조영삼 : 적극 동의함. 기관의 연구사로 근무하고 있어도 기관의 기록물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에 있는 분들도 많다고 봄. 통일부에서는 남북회담본부에서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작년이었음. 10년간 지속적으로 시도해서 남북회담 본부에서 어떤 기록이 있는지 파악했고, 일부 기록물을 이관 받음. 중앙부처, 기타 공공기관들에 있어서의 기관의 성격, 기록연구사의 업무 집중도,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무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위원장 : BRM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설문원 : 업무맥락 정보만 분류체제로 관리한다는 것임

전진한 : 공개재분류와 관련하여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음. 과거 김창조 교수님께서 진행하다가 중단 된 것임. 이번에는 기록원 입장에서라도 다시 연구용역을 추진하든지 힘을 써주시기 바람. 비공개 상한제도가 다 연결됨

조영삼 : 상한제도는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전진한 :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봄. 70년, 100년이 과하다고 생각한 것임

조영삼 : 다른 나라에서는 120년, 150년임

김형국 : 2007년도에 상한제도를 시행령에 반영하려고 했음. 추진과정에서 아무도 의견이 없었음. 개인정보를 70년만에 다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도, 반대를 안함. 유일하게 시민단체에서 반대해서, 제도보완을 위해 용역을 추진했었음. 상한제도는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함. 우리가 정한 내용은 외국보다 기간을 더 짧게 잡고 있음

이원규 : 상한제도는 기록관리법에 넣어야 하는지, 정보공개법에 넣어야 하는지?

조영삼 : 정보공개법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해 나가야 함

김형국 : 기록관리법에 반영해야 함. 내부 논의는 개인정보에 대한 상한제도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나 외교 부분을 먼저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개인정보 부분은 논란이 많음

이원규 : 개인정보의 경우, 70년 후에 공개한다는 데, 미리 폐기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조영삼 : 그 때까지 살아남은 정보 중에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함

김창조 : 법률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음. 요즘은 시효를 가능하면 줄임. 그만큼 생활환경이 변했다는 이야기임. 아카이브를 보는 시야도 50년 전에 설계한 유럽제도를 감안하지 말고, 우리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필요 있음

위원장 : 그 당시 70년 상한제를 반대했던 이유는?

전진한 : 의료기록 때문에 더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70년 있다가 다 공개하자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에이즈 등 특정질환자의 후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반대

조영삼 : 모든 규정에 예외가 있으므로 예외규정을 두면 됨. 반대한 이유는 70년으로 정하면 70년 될 때까지 공개 안하기 때문임. 30년 공개원칙인데도, 70년까지 공개안할 것임

김형국 : 30년 공개제도를 운영하면서, 데이터 들이 축적되면 기준을 잡아 상한제도를 추진하자고 했음. 마지막으로 주저되는 부분이 상한기간이 원칙이 되어 30년 공개되어야 할 기록도 상한기간에 맞추어 공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위원장 : 개인정보는 사망 후 몇 년 등 다양한 방법의 적용이 가능함. 악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1분과로 넘어가겠음

이상민 : 궁금한 점이 있음. 전자기록 재설계와 차세대 전자기록관리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상관이 없는지?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음. 예를 들어 전문직 중심으로 용역을 함. 전자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용역을 잘 했든 못했든 간에 그것은 연구용역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기록계 전체가 짊어지게 되는 것임. 그런데 우리 TF의 전자기록 설계방향과 다르면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걱정이 됨

설문원 : 큰 방향은 다르지 않음. 분류체계 재설계, 스캐줄링은 차세대의 기본방향과 다르지 않음. 다만, 그것에서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등 관련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음. 프로젝트 보고서는 다 끝나지 않았으나 중간보고와 관련 자료를 보았음

심성보 : 용역 최종보고서가 확정되었는지?

설문원 : 최종보고서는 보지 못했고, 중간 버전은 봤음

김형국 : 중간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음. 마무리 되면 공유하도록 하겠음

이상민 : 행정정보데이터 세트는 많이 보완 할 것이라고 함

위원장 : 1분과 보고해 주시기 바람.

심성보 : 2, 3과제 관련해서 분과 내에서 토론을 하였음. 원래 오늘 회의에 초안을 보고드릴려고 했으나, 위원들 간 이견과 문안 성안이 지체되어 간략하게만 말씀 드림. 2과제 ‘국가기록관리 체계 혁신’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선에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내용을 보고서에서 정리할 것임. 사회전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국가기록관리 체계 역할들을 전망하고, 미션, 비전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 필요절차 등을 제안하고자 함. 또한 기록관리체계의 현황, 진단을 전제로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임. 예를 들면 민간기록관리 현황, 기록 이용자와 비이용자에 대한 분석, 현황 등을 조사하고 나서 체계를 잡아야함. 그런 필요성을 중장기적으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음. 3과제 ‘국가기록원 기능조직 혁신’ 관련해서는 공공기록관리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국가기록원의 직제와 관련된 개선을 통해, 즉각 추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려고 함. 제일 중심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아카이브의 제 기능이 수행되지 않거나, 직원들이 기록과 떨어져 있는 것을 정상화

하는 것임. 기능과 조직 이외에도 일하는 방식, 직급별 업무분장 등 구조적인 것이 흘러가려면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제시 하려 함. 예를 들면 계장 직위에 고유업무를 부여하거나 하는 문제 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함

1과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현재 20명 정도 면담, 서면면담을 완료하였음. 면담확인서 등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임. 다음 주 한 두 차례 더 예정이 되어 있고, 면담 절차는 종료할 예정임. 최근에는 아주 상징적인 일이 있었음. 면담과정에서 TF가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 속기록을 대통령기록관의 해당 부서에 요청하였음. 근거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생산의 무회의로 13년도에 지정되었고, TF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해당 사안의 자료 조사를 위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요청함. 면담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직원이 속기록의 존재를 부인한 적도 있었음. 속기록이 필요하고, 생산의무 회의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하여 속기록을 요청함.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부서는 면담과정, 후속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서 연락해옴. 사본교부는 곤란하고, 열람만 가능함. 열람할 때도 위원 실명은 비공개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함. 현장에서 그러한 소견을 듣고, 1분과 위원들의 판단으로 열람을 거부하고 열람을 하지 않음. 이것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1분과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상징적인 사건임. TF위원, 활동에 대해 외부인, 제3자로 간주하는 것, 제 개인적인 판단은 조직적인 회피행위라고 보고 있음. 또한 국가기록원 스스로가 속기록 녹음기록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록관리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함. 실제로 담당계장, 과장들에게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도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림. 이런 여건 속에서 비협조적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함. 최선을 다해서 1

과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설문원 : 우리가 비공개 기록물을 볼 수 있는 근거, TF가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하고 요청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조영삼 : 공무수행 이유임

이상민 : 기록원에서 위임을 받아 기록원 업무활동을 하는 것임. 공무원과 똑같은 규정을 받는 것임. 우리가 볼 수 있음

설문원 : 공무수행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에 해당되는 것 같음. 열람은 되고, 사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 방식임. 규정 적용이 맞는 것인지?

김형국 : 제한적 열람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공개기록물을 외부 열람 요청자에게 적용하는 제도임

이상민 : 위원 실명을 가리고 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음

전진한 : 그 쪽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단한 듯함. TF 인정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국가기록원이지 대통령기록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 생각함

조영삼 : 장관이 위촉한 활동을 부처의 직원이 용인하지 않고 판단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행동인지 모르겠음. 항명임

설문원 : 비공개기록을 다 볼 수 있는가?

전진한 : 비밀기록만 빼고 다 볼 수 있음

조영삼 : 비밀기록도 못 볼 것 없음. 비밀인가를 민간에 줄 수 있음. 안 된다고 할 수 없음

최재희 : 국정원 TF 경우, 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조영삼 : 충분히 자료제공 하기로 이상진 전 원장이 확인해 주었음

이상민 : 대통령기록관 직원들이 국가기록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인지? 이런 상태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음

설문원 : 대관도 나름대로 내부적인 원칙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논리적으로 접근 필요

조영삼 : 논리 문제가 아님

설문원 : 항명한다고 우리끼리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원칙을 만든 것 같음

조영삼 : 토론할 거리가 없음.

김창조 : 형식적 이유와 실질적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심성보 : 조문을 예로 드는 것, 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될 일임. 기본적으로 관점이 다르고, 20여 명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직원, 일부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게 되는 측면도 있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고체계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 됨. 속기록 비공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명에 준하는 것 같음

위원장 : TF의 총괄팀장 명의로 대통령기록관에 그렇게 열람하게 된 근거,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람

최재희 : 이번에 대통령기록관 속기록도 그렇고, 면담과정에서 거의 옛날 청문회처럼 그 부분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부분이 많음. 기본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쓸 게 없음

조영삼 : 몇 년 지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거의 공통된 대답

최재희 : 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 때문임

위원장 :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음. 1분과 관련해서 의견 없으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일정하고 보고서 작성의 최소한의 형식을 논의해서 틀을 잡아 놓으면 좋겠음. 12월말까지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함. 2분과는 어떠신지? 과제가 제일 많은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1분과도 12월말까지는 작성이 가능 하시겠지요? 3분과는 진도가 많이 나가 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22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 인데, 특별한 안건 없이 보고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음. 2시간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음. 보고서 전부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1분과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2, 3과제는 전체보고서 속에 포함되어야 하고, 1과제도 대략은 포함이 되어야함. 1분과는 해왔던 일들이 전체 보고서에 상세하게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

고서 형식으로는 상세한 보고서는 별도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함

이상민 : 1분과 보고서는 잘못된 일에 대해 조사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다른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음. 표현이 과하다 아니다는 이야기 할 수 있음. 보고서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과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음. 일주일 전에 위원들이 미리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듦. 1분과 위원들에 위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2, 3과제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1과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있을지 모르니까 최종보고서에 나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함

설문원 : 각 사건별로 조사가 이루어졌음. 사안별로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상세한 면담을 하셨을 것이지만, 정리는 되어야 함. 이것을 하는 목적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 라기 보다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임. 사건별로 요약해 주고, 문제가 된 것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음. 뒤에 디테일한 부분은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이런 부분은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보안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 전체적인 정리는 공유를 하고,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음

심성보 : 1분과에서는 별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중론임. TF의 분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약이든 권고가 됐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것은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전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리겠음. 더 중요한 것은 1분과 4명의 중론은 금번의 폐단혁신 관련 조사를 이 시점에서 일단락 짓거나 종결지을 수 없다는 것임. 올해 12월말 종료되는 TF의 활동으로 해

당 혁신과 관련된 노력이 종결될 수 없는 것 같음. 이제까지 노력한 것, 향후 관련된 사안들이 어떻게 계획되었으면 좋은 것인지 전체회의에 보고하겠음. 공개할 것들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들은 별권으로 따로 작성하자는 것이 1분과 위원들의 의견임. 보고서는 활동의 경과, 현황 보고, 그동안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각종 자료 등을 정리해서, 이후에 관련된 사안들에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임. 1분과에서 별권은 백서가 아니고 자료집의 성격임

전진한 : 그러면 분과별 의견이 되는 건가요?

심성보 : 그러한 경과로 별권이 작성되었음을 전제하면 됨

전진한 : 예를 들면 대통령기록만 해도 지정기록물에 논란이 있고, 합의가 안 됨. 소수설을 기입을 할 것인지, 제3분과 의견이다 등

심성보 : 1과제에 한해 말씀드린 것임

전진한 : 분과의 공통 의견인 것인지?

이상민 : 공통의견이 아니라 합의 의견임

위원장 : 설문원교수님 말씀대로 1과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은 본 보고서에 들어가야 함. 향후 이 일들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조치되어야 하는 것은 권고하는 형식으로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하면 됨

이상민 : 그럼 별권 보고서의 성격은? 진상보고서의 성격인데, 본회의가 보지 않고 추인하게 되는 것인가? 위원장만 추인하면 되는 건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 보고서 안에 들어가야 할 부분은 모든 조사상황, 발견된 의혹, 추가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사항, 건의 등이 들어감. 그런 부분에도 공개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증언 부분은 별개의 자료이므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런 보고서는 1분과 보고서에 들어가도 무방할 듯함. 본회의 추인을 받아야 할 듯함

심성보 : 다른 분과처럼 공개되는 것은 22일에 보고하고,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함. 별권이 있을 수 있음

이상민 : 우리가 다 접근하지 못한 개인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 온 보고 내용을 추인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한 것임.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과정에 대한 설명, 향후 더 조사해야 할 사항, 조사 방향, 조사할 때 문제점 등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음

위원장 : 별권으로 하는 것은 자료집 형태가 아닐까 생각함

이상민 : 보고서에 실명을 제외하고 들어갈 부분을 들어가게 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공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전진한 : 위원장님의 별도 기자회견을 할 계획은?

위원장 :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도 해야 하고,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관련된 분들과 상의를 할 것임

이상민 : 법률적 고려 등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 : 조사하면서 논의를 여러 방면으로 해야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를 해서, 형식이 어떻게 되었든 공표해야 할 사안이 있는지 판단도 필요함

이상민 :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중간에 발표하면서, 검찰수사로도 이끌어 갔음. 조사한 사항 중에 불법적인 것이 있을 경우에는 권고사항에 고발을 권고할 수도 있는 것임. 다만, 국정원 개혁위 같은 사회적 파장이 없는 사안들임. 우리 내부에서만 파장이 있을 부분인데, 결국은 아주 예외적으로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때만, 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이 기록원에서 잘못 해온 일임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함

위원장 : 그것은 내용을 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듯함. 저도 1분과 내용을 잘 모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판단하겠음. 혹시 더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김형국 :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는 보고서 안들이 논의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29일까지는 기록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 적어도 위원장, 분과장은 모여서 원장님과 직접 전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함

심성보 : 22일 이후에 최소한 분과장 정도만이라도 모여서 최종본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는 방법은 어떨지?

설문원 : 최종본이 나오면 공유해서, 온라인에서 의견을 나누면 좋을 듯함

심성보 : 협의가 끝나고 최종본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임. 최소한 분과에서 1명 정도는 참석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듯함

김형국 : 그럼 마지막 주에 일정을 하나 잡아 놓도록 하겠음. 28일쯤 만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음

위원장 : 몇 시에 하면 좋을지?

설문원 : 28일 오전 10시에 하면 좋을 듯함

최재희 : 22일 회의는 오전만 하기에는 어려울 듯함

김형국 : 다음 주는 오후까지 잡아 놓겠음

위원장 : 22일은 10시부터 2시까지 하는 것으로 함.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음. 수고하셧음